



# 보도참고자료

2020. 11. 27.(금) 배포

힘내라 대한민국

##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 안전 특별방역 대책 강화 -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-

-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험생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학원 방역 대책을 강화하였다.
- 확진자가 88명 발생한(11월24일 19:30 기준)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집단감염\* 사례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전파하여 감염확산의 경각심을 제고하고,
  - \*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(11.23.)을 실시,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학원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현재 검토 중
  - 수능 특별 방역기간(11.19.~12.3.) 동안 학원·교습소의 등원을 자제할 것과 학원·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였다.
    - ※ 방역수칙 위반 학원 및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학원측의 과실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,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재차 안내
- 특히, 수능 1주 전 기간 동안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여
  - 원격수업 전환을 하지 않은 입시학원(교습소 포함)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점검 및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\*한다.
    - \*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7:00 이후 야간 불시 점검 실시
-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'학원 감염자의 학원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'\*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\*\*(11.19.~12.2.)중이다.

\* (대상) 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(교습소 포함)으로서 해당 학원에 ② 수험생(고3, 졸업생 등)이 등원하고 있는 학원

\*\* (목록) 학원 명칭, 주소, 확진일, 확진자 수, 감염경로 및 사유 등

□ 한편,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밀집도 조정\*, 음식물 섭취 금지\*\* 등을 포함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.

\*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,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→ ①안 ②안 중 선택

\*\* (원칙) 음식물 섭취 원칙적으로 금지 (예외) 월 80시간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

※ 2단계 격상 지역 : 수도권(11.24.~), 전남 순천(11.20.~), 경남 하동(11.21.~)

【붙임】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□ **학원**(독서실 제외, 교습소 포함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</li> </ul> </li> <li>▶ ①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,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①안 ②안 중 선택</li> <li>*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</li> </ul> </li> </ul>

□ **독서실**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▶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,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/ul>